



## 상호 협력 협약서

「대구대학교」와 「대구지방법원」은 인문·사회·공학·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과 공공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대구대학교」와 「대구지방법원」은 아래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협력 및 지원한다.

**제1조(목적)** 「대구대학교 AI기반 공감형 융합인재양성 사업단」과 「대구지방법원」은 인문·사회·공학·예술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과 공공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 및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양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제3조(협력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의 취지에 따른 융합형 교육 및 연구 활동 협력
2. 법·사회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특강, 세미나, 견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3.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협력
4. 양 기관의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및 교류 활동 협력
5.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4월 29일

대구대학교  
총장 박순진

박순진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강동명

강동명